

IP NEWSLETTER

2019 년 1 월 발행통권 제 199 기

뉴스요약

- 1.전국 지식재산권국 국장 회의에서 2018 년 지식재산권 데이터 공포
- 2.지식재산권법정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3.지식재산권 분쟁 행위보전 사건 심사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전국 지식재산권국 국장 회의에서 2018 년 지식재산권 데이터 공포

1 월 7 일, 전국 지식재산권국 국장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2018 년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를 공포하였다.

2018 년 연말까지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하지 않음) 발명 특허 소유량은 160.2 만건에 도달하였고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다. 1 만인구당 발명 특허 소유량은 11.5 건에 도달하였다.

2018 년도 PCT 국제특허출원 접수량은 5.5 만건이며 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국내 유효상표등록량(해외에서 중국으로의 등록과 마드리드 등록 포함하지 않음)은 1804.9 만건에 도달하였으며 전년대비 32.8% 증가하였다.

2018 년도 마드리드상표 국제등록출원량은 6000 건을 초과하였으며 전년대비 25%이상 증가하였다.

허가한 누적 지리적 표시 제품은 2380 건이고 별도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 상표는 4867 건이다.

2018 년 특허 행정집행 및 사건처리는

7.7 만건이고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으며, 조사처리한 상표 위법 사건은 3.1 만건이고 사건 금액은 5.5 억위안에 도달하였으며 벌금액은 5.1 억원에 도달하였다.

2018 년 지식재산권 사용비의 수출입 총금액은 350 억달러를 초과하였다.

회의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Mao ZHANG(张茅)는 정치적 책임감과 현실적 긴박성을 가일층 증가시키고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을 가속화하여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것을 요구하였다.

1. 지식재산권 심사효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3. 지식재산권 보호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4. 체제 메커니즘 완벽화를 위해 노력할 것;
5.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지식재산권법정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지식재산권법정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은 2018 년 12 월 3 일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 1756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8 년 12 월 27 일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표준을 가일층 통일시키고, 법에 따라 각 유형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력을 강화시키고, 과학기술 혁신의 법치환경을 최적화하며

혁신구동 발전전략의 실시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사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절차 약간 문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등 법률규정에 따라 실제 심판업무와 결부시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 1 조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주로 특허 등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지식재산권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북경에 설립한 상설재판기구이다.

지식재산권법정에서 내린 판결, 재정, 합의서 및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합의서 및 결정이다.

제 2 조 지식재산권법정에서는 아래 사건을 심리한다.

- (1)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린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독점에 대한 1 심 민사사건 판결, 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2)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서 내린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 수권확권에 대한 1 심 행정사건 판결, 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3)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린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독점 행정처벌 등에 대한 1 심 행정사건 판결, 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4) 전국 범위내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본 조항 제 1, 2, 3 항에서 말하는 1 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 (5)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본 조항 제 1, 2, 3 항에서 말하는 1 심사건의 판결, 재정, 합의서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재심신청, 항소, 재심 등 심판감독절차를 적용하는 사건;

(6) 본 조항 제 1, 2, 3 항에서 말하는 1 심사건의 관할권 쟁의, 벌금, 구속 결정에 대하여 재의신청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사건;

(7)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건.

제 3 조 본 규정 제 2 조 제 1, 2, 3 항에서 말하는 1 심사건의 심사법원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지식재산권법정에 서면파일과 전자파일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 동의를 거친 후 지식재산권법정은 전자소송 플랫폼, 중국심판절차정보공개 사이트 및 팩스, 이메일 등 전자방식으로 소송서류, 증거자료 및 재판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다.

제 5 조 지식재산권법정은 전자소송 플랫폼 또는 온라인 영상 등 방식으로 증거교환, 재판전 회의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 6 조 지식재산권법정은 사건상황에 따라, 현지 또는 원심인민법원 소재지에서 사건을 순회재판할 수 있다.

제 7 조 지식재산권법정은 집행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는 사건의 입안정보, 합의정 구성인원, 심판절차, 재판서류 등을 법에 따라 당사자 및 사회에 공개함과 동시에 전자소송 플랫폼, 중국심판절차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 9 조 지식재산권법정 판사회회의는 재판장, 부재판장 및 약간의 베테랑 판사로 구성되어 중대하고 어려우며 복잡한 사건 등을 논의한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법정은 관련 사건 심판업무의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재판표준과 심사규칙을 적시에 총결하여 하급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본 규정 제 2 조 제 1, 2, 3 항에서 말하는 1 심사건의 판결, 재정, 합의서에 대하여 성급인민검찰원이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고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2 조 2019 년 1 월 1 일 전에 내린 본 규정 제 2 조 제 1, 2, 3 항에서 말하는 1 심사건의 판결, 재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항소 또는 재의신청할 경우, 원심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13 조 2019 년 1 월 1 일 전에 내린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본 규정 제 2 조 제 1, 2, 3 항에서 말하는 1 심사건의 판결, 재정 또는 합의서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재심신청, 항소, 재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 본 규정 시행 전에 비준을 거쳐 특허,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독점에 관한 1 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기층인민법원에서는 상기 사건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기층인민법원에서 2019 년 1 월 1 일 까지 미판결한 전항에서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해당 판결, 재정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본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지식재산권 분쟁 행위보전 사건 심사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지식재산권 분쟁 행위보전 사건 심사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 177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8년 12월 12일

(2018년 11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 177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석[2018]21호

지식재산권 분쟁 행위보전 사건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사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제 심판 및 집행업무와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본 규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민사사건 소송개요 규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을 말한다.

제 2 조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가 판결, 재정 또는 중재 재결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민사소송

법 제 100 조,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보전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의 라이선시가 제소 전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중지를 신청할 경우, 독점적 라이선스계약의 라이선시는 단독으로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배타적 라이선스계약의 라이선시는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을 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라이선스계약의 라이선시는 권리자로부터 명확한 수권을 받을 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제소 전 행위보전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 주소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구비하고 있는 인민법원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구비하고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할 경우, 전 항에서 규정한 인민법원에 행위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에 행위보전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신분, 송달 주소지, 연락처;
- (2) 신청하는 행위보전 조치의 내용 및 기간;
- (3)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보완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게 되거나 사건 재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초래하게 될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
- (4) 행위보전의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 정보, 신용증명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 (5)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기타 사항.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위보전 재정을 내리기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의견청취하여야 한다. 단, 상황이 긴급하거나 의견청취절차가 행위보전 집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법원이 행위보전 재정을 내리거나 신청 기각 재정을 내릴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재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에게 재정서를 송달할 시,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는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행위보전 조치를 취한 후 적시에 피신청인에게 재정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최장 5 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행위보전을 신청할 경우, 중재기관을 통하여 인민법원에 신청서, 중재사건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행위보전 재정을 내리거나 신청 기각 재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재정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중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6 조 다음 각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이익에 충분히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을 시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에서 규정한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곧 불법적으로 공개될 경우;
- (2) 신청인의 공표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이 곧 침해될 경우;
- (3) 계쟁물인 지적재산권이 곧 불법적으로 처분될 경우;
- (4)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 전시회 등 시효성이 비교적 강한 상황에서 침해를 받고 있거나 곧 침해될 경우;
- (5) 시효성이 비교적 강한 인기 프로그램이 침해를 받고 있거나 곧 침해될 경우;
- (6) 즉시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기타 상황.

제 7 조 인민법원은 행위보전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청구가 사실기초와 법률근거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보호를 요청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포함;

- (2)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미봉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지 여부 또는 사건의 재판결정 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등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 (3)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초래하게 되는 손해가 행위보전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 피신청인에게 초래하게 되는 손해를 초과하는지 여부;
- (4) 행위보전 조치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 (5) 고려하여야 할 기타 요소.

제 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보호를 요청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권리의 유형 또는 속성;
- (2) 해당 권리가 실체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 (3) 해당 권리가 무효선고 또는 취소 절차 중에 있는지 여부 및 무효로 선고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4) 해당 권리에 소유권 관련 분쟁이 존재하는지 여부;
- (5) 해당 권리의 효력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소.

제 9 조 신청인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을 근거로 행위보전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발행한 조사보고서, 특허권 평가보고서 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내린 해당 특허권 유효성 유지에 대한 결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기각 재정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 분쟁 관련 행위보전 사건에 있어서 다음 각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 101 조에서 규정한 '미봉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1)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이 향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신용과 명예 또는 공표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 (2) 피신청인의 행위가 권리침해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게 하고 신청인의 손해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경우;
- (3) 피신청인의 침해 행위가 신청인의 관련 시장 점유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경우;
- (4) 신청인에게 미봉하기 어려운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제 11 조 행위보전을 신청한 신청인은 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은 행위보전 조치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해에 상당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행위 중지 요청과 관련되는 제품의 판매수익, 보관비용 등 합리적인 손실이 포함된다.

행위보전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받게 될 손해가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상응한 담보를 추가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추가 제공을 거부할 경우, 행위보전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는 재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2 조 통상, 인민법원에서 취하는 행위보전 조치는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해제되지 않지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에서 행위보전 재정을 내릴 경우, 신청인의 청구 또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행위보전 조치 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중지에 대한 재정 효력은 사건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추가 담보 제공 등 상황에 따라, 행위보전 조치 유지 재정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인이 행위보전 조치 유지를 청구할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 7 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당사자가 행위보전 재정에 불복하여 재의를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재의 신청을 접수한 후 10 일 내에 심사하고 재정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에서 취하는 행위보전의 방식과 조치는 집행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다음 각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 105 조에서 규정한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행위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 (2) 행위보전 조치가 보호를 요청하는 지식재산권의 무효선고 등 원인으로 인해 처음부터 부당할 경우;
- (3) 피신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중지를 신청하였지만 확정판결은 권리침해 또는 부정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4) 신청에 착오가 있다고 해당되는 기타 상황.

제 17 조 당사자가 행위보전 해제를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166 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될 경우, 5 일 내에 해제 재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행위보전 신청을 취하하거나 행위보전 해제를 신청할 경우, 이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 105 조에서 규정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18 조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 105 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이 제소 전 행위보전 신청을 제출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행위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

였을 경우, 소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19 조 신청인이 행위보전,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각 유형의 보전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재정을 내려야 한다.

피신청인의 재산이전, 증거인멸 등 행위로 인해 보전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동한 유형의 보전 조치 집행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행위보전을 신청한 신청인은 <소송비용 납부방법>의 행위보전 신청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본 규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본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